



소통하는 의정 공감 받는 의회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9. 3. 8. (금) 10:0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충환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임 기 중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19년 2월 26일

○ 회부일자: 2019년 2월 27일

3. 제정 이유

충청북도 학생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 발생을 줄이고,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하여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라. 학교폭력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를 규정함(안 제5조)

마.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바. 학교폭력예방교육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사. 학교폭력근절 문화 조성을 규정함(안 제8조)

- 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주간을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 자. 자문기구 설치·운영을 규정함(안 제10조)
- 차. 학교폭력 관련 예산지원을 규정함(안 제11조)
- 카. 관계기관과의 협조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충북의 학교폭력이 2017년 초·중·고 전체 454건에서 2018년 507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고등학생에 비해 초학생과 중학생의 학교폭력 증가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충청북도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피해학생의 보호·치유, 가해학생의 선도·교육과 피해·가해학생 지원 조치를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규정 하고, 안 제4조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한 것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교육활동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대책에 필요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료됨.
- 피해·가해학생 지원 사항을 담은 안 제6조는 가해·피해 학생에게 필요한 상담과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하여 실제적인 치유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7조의 예방교육 지원에서는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교직원과 학부모는 물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까지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특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있는 분쟁조정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안 제8조에 학교폭력근절 문화 조성과 안 제9조에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주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한 것은 자칫 이론적인 교육으로만 그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여 인간에 대한 존중감과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인간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하게 함.
- 안 제10조의 학교폭력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2조에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것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처를 위한 교육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각적 측면에서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다만, 이를 위해서는 협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소통과 실행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 제정안은 전체적인 조문 구성과 내용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위반 사항이 없고,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과 대처를 위한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 판단됨.